

# 朝鮮 後期 木材商人에 대한 一研究

吳 星\*

- |             |             |
|-------------|-------------|
| 1. 序 論      | 4. 木材商人의 性格 |
| 2. 木材商人의 活動 | 5. 結 語      |
| 3. 松禁政策의 實施 |             |

## 1. 序 論

朝鮮 後期の 商人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주목된 바 있다. 팔목할만한 업적도多數 발표되었다. 그 결과 商人의 活動形態라든가 그들이 축적한 資本의 性格, 나아가서는 商業界 전반의 特性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sup>1)</sup>

그런데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地域別로 구분한다든가<sup>2)</sup> 商人이 지니고 있던 性格에 따라 그들의 實體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었다.<sup>3)</sup> 물론 이

\* 世宗大學 歷史學科

1)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업적 몇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宋贊植, 『李朝後期 手工業에 관한 研究』 1973;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 1977.

2) 姜萬吉, 「京江商人과 造船都賈」,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姜萬吉, 「開城商人과 人蔘栽培」,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稻葉君山, 「灣商」, 『朝鮮史講座』, 1923 등이 있다.

3) 韓祐勳, 「李朝 後期 賈人의 身分」,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5, 1965; 劉元東, 「李朝 賈人資本의 研究」, 『李朝後期商工業史研究』 1968; 劉元東 「서울 六矣廬研究」, 『李朝後期商工業史研究』, 1968; 姜萬吉, 「都賈商業과 反都賈」, 『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 1973; 河原林靜美, 「18·9世紀における廬人と私商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1975 등을 들 수 있다.

러한 방법 역시 나름대로의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同一地域의 商人이라 하여 同一한 物産만 취급했던 것은 아니며, 그들의 利害라든가 性格도 모두가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商人이 지니고 있던 特性 또한 物種에 따라서 혹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의 여지는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朝鮮 後期 商人의 모습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商人이 취급했던 物種別로 분류·검토하여 보는 작업이다.<sup>4)</sup>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商人을 파악한다는 면에서는 일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筆者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토대위에서 木材를 취급하고 있던 商人(이하 略 木商)에 대하여 주목해 보려고 한다. 木商은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던 상인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伐木과 이에 따른 賣買活動을 벌이고 있었다. 木商의 움직임에 따라 지나쳐버릴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木商의 경우를 통하여 朝鮮 後期 商人의 특성이나 성격도 규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한다.

本稿는 바로 위와 같은 木商의 활동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 아울러 木商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sup>5)</sup> 다만 筆者의 능력이 부족하여

4)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기왕의 연구로는,

林仁榮, 『李朝魚物廳研究』, 1977; 拙稿, 「朝鮮 後期 「藝商」에 대한 一考察—私商의 據頭와 관련하여—」, 『韓國學報』 17, 1979 겨울을 들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시기적으로는 朝鮮 中期에 해당되지만, 崔完基, 「朝鮮 中期의 貿穀船商—穀物의 買集活動을 中心으로—」, 『韓國學報』 30, 1983 봄도 주목된다.

5) 柴炭을 취급하던 상인은 일단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史料에 柴商이라는 표현으로 따로 나오고 있고, 취급물종도 달랐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木商의 경우에는 주로 生木을, 柴商의 경우에는 柴炭을 매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柴商은 독립하여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私鑿山의 주인으로서 木材를 팔던 사람들도 木商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목재를 대개만 했을뿐 매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매매활동을 하던 商人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기록상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朝鮮 後期 商人의 이해에 있어서 한가닥 보탬이 된다면 더할 기쁨이 없겠다.

## 2. 木材商人의 活動

木商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또 얼마만큼의 木材를 伐採하였는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木商의 活動에 따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木商의 對應, 또 그들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해명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木商의 伐木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우선 눈에 뜨인다. 즉 英祖 12年 6月 左議政 金在魯의 啓에

此乃江春監司韓顯蕃狀啓也 以爲本道封山 今皆濯濯 此由於木商輩(備邊司謄錄 99 英祖 12年 丙辰 6月 6日)

라 하여 木商에 의해 江原道の 封山<sup>6)</sup>이 모두 濯濯하여 졌다는 것이다. 木商이 伐採한 量이 구체적으로 밝혀 있지는 않다. 그러나 江原道の 封山이 木商에 의해 대부분 濯濯해진 형편이었다면 木商이 斫伐한 木재의 量이 결코 적은 것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備邊司謄錄 153 英祖 45年 己丑 5月 9日 기사를 보면,

(領議政洪鳳漢) 又所啓(中略) 而斧斤日入 山原日濯 其爲寒心 孰甚於此(中略) 上曰(中略) 問其弊 一則木商牟利

라 하여 斧斤들이 날로 들어가 山原이 濯濯하여져 심히 한심스러운 일인데,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첫째 원인이 木商의 牟利에 있다는 것이다. 역시 정확한 伐採量은 밝혀있지 않으나 木商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도 그들을 木商이라 지칭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6) 나라의 需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伐木을 禁한 山을 가리킨다.

목재가 斫伐되고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正祖 6年 1月 全羅左水使 姜五成이 올린 狀啓에도

木營三條弊端 而其一論松田童濯之弊也 (中略)大抵松田之童濯 不但由於船材之多出而已 近緣禁令不嚴 察飭漸懈 營校邑吏 無不憑藉 而加斫板商木賊 舉皆資緣而潛伐(備邊司謄錄 164 正祖 6年 壬寅 1月 17日)

라 하여 전라좌수영이 안고 있는 세가지 폐단 가운데 첫번째가 松田이 童濯해지는 것인데, 그 원인의 하나로 板商·木賊의 潛伐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기사들과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木商의 斫伐이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木商은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木材를 伐採하고 있었을까. 앞서 인용한 바 있지만 斧斤이 날로 들어가 山原이 濯濯하여 졌는데 그것이 木商의 牟利에 의한 결과였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備邊司謄錄 153 英祖 45年 5月 9日), 木商이 伐木하는 수단인 하나로써 斧斤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만 가지고는 얼마만큼의 斧斤을 어떻게 동원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잘 헤아릴 수가 없다. 아래의 기록을 통하여 다소나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而該道(京畿道) 山直輩 作弊受賂 (中略)發遣郎廳摘奸 則神穴里近處山麓 大中小松所斫之數 至於一萬一千八百九十條之多(備邊司謄錄 34 肅宗 4年 戊午 6月 9日)

경기도 神穴里 근처 산의 山直輩가 受賂하여 作弊를 저질렀는데, 이 때에 伐採한 松木이 11,890 株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採伐한 松木의 量으로 미루어 한 두사람의 斧斤이 동원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山直에게 뇌물을 준 사람은 木商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1萬株 이상의 松木을 취급할 사람으로는 전문적인 상인, 즉 木商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木商이 상당수의 斧斤을 동원하여 伐木하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木商이 斧斤들에게 지급한 고용가가 얼마였는지,

斧斤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아마도 賃勞動者들이 아니었을까 여겨지지만 확실한 모습은 단언할 수가 없다.

한편 備邊司勝錄 169 正祖 10年 丙午 9月 13日 기사를 보면,

近來法綱解弛 禁養山直輩 皆是本土之人 故奸民土豪 不畏法禁 締結木商 恣意偷斫 體大者以材木發賣 體小木則埋炭分利 岡有紀極 兩邑之養松 舉皆童濯

이라 하여 木商이 지방의 土豪나 山直輩, 일반 백성들과 결탁하여 偷斫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伐採한 木材를 材木으로 매매하거나 혹은 埋炭하여 이익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기록들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① 山直則私自契坊 與偷斫之輩 同心分利(備邊司勝錄 124 英祖 28年 壬申 8月 11日)

② 而四山近處 勿論兩班常漢 與山直輩 結作契房 斫伐生松 浮出屋材 共爲姦利 無有限極(備邊司勝錄 44 肅宗 16年 庚午 6月 24日)

①은 山直이 偷斫輩와 더불어 契坊을 조직하여 分利한다는 것이다. ②는 兩班·常漢을 막론하고 山直과 함께 契房을 만들어 生松을 斫伐, 屋材로 팔아서 이익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다. 山直과 兩班, 常人, 偷斫輩가 공동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木商이라는 분명한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앞에서 보아온 경우들의 예에 비추어 木商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다. 그런데 上記 기사에 따르면, 兩班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契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물인지,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대인지는 잘 알 수 없다. 偷斫한 목재의 매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취하고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고 契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常漢이라든가 偷斫輩로 나오는 사람들은 木商을 가리킬 수도 있고, 斧斤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兩者를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木商을 중심으로 兩班·山直·斧斤 등이 하나가 되어 契를 조직하고 儉斫한 목재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나누어 소유하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木商이 상당한 량에 이르는 목재를 벌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斧斤을 동원한다든가 혹은 山直과의 결탁, 또는 兩班까지 가담된 契房을 조직하고 있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木商이 木材를 保有하는 방법의 일단을 알아 본 셈이다.

그러나 木商들은 위의 방법 이외에 또 다른 경로에 의해서도 목재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래의 기록들을 검토하여 보도록 하자.

① 而所謂別將稱號者 先斫大木作板 而四處出賣(備邊司謄錄 82 英祖 3年 丁未 10月 1日)

② 三南及海西松禁之處 百年長養之松 或憑藉公用 或圖出營帖文 恣意斫伐 或以棺板 或以家材 買賣取利 至於鹽汗店民 恣意儉斫(備邊司謄錄 47 肅宗 19年 癸酉 3月 25日)

③ 憲府掌令金養心(中略) 又啓曰 禁衛大將具善復 憑藉蟲損 南山松木 恣意濫斫 發賣京外 利歸私家 傳說喧藉 請罷職(英祖實錄 120 英祖 49年 癸巳 1月 丙午)

①은 소위 別將이라는 자가 먼저 斫木, 作板해서 四處에 出賣하였다는 것이다. ②는 三南과 海西地方의 오래된 松木이 公用을 빙자한다거나 各營의 帖文을 이용해서 몇대로 伐採되고 있는데, 이러한 松木들이 棺板 혹은 家材로 매매되어 取利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別將이라든가 各營으로부터 木材를 買入한 사람들은 아마도 木商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禁衛大將 具善復이 南山의 松木을 濫斫하여 京外에 發賣한 것도 (③), 木商의 買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런데 ②에 따르면, 鹽汗店民에 이르기까지 松木을 儉斫하여 賣却, 取利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木商을 松木의 매각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木商이 일반 民으로부터 木材를 매입하고 있던 셈이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의 史料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備邊司謄錄 120 英祖 25年 己巳 7月 17日 慶尙左水使 李彥燮이 올린 申本 속에 있는 梁山郡

守 權禹의 牒呈을 보면,

而梁民甘於封山之次次革罷 利於火枯之漸漸偷斫 可用船材 盡爲梁民販利之資

라 하여 梁山郡의 백성들이 船材로 쓸 수 있는 木材를 偷斫·판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②의 기사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木商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木材를 매입하고 있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 않을까 한다.

한편,

船人之賣木爲業之弊 與前無異

라는 備邊司牒錄 77 英祖 元年 乙巳 6月 22日 기사를 보면 船人이 木材를 파는 것으로 業을 삼고 있는데 이전과 다름이 없다고 되어 있다. 船人の 경우 어떠한 까닭에서 賣木을 業으로 삼고 있었는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할 이상의 木材를 斫伐하여 木商에게 팔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추측된다.<sup>7)</sup> 요컨대 木商은 직접적인 斫伐에 의해서, 혹은 守令이나 地方官府 또는 일반民으로부터의 買入에 의하여 多量의 木材를 保有하고 있던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木商은 이와 같은 상당량의 木材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을까.

7) 다음의 기록도 참고가 될 것이다. 즉 在前則大小靑島松木外 眞木亦爲茂盛 不可勝用矣 近來船人輩偷斫之弊 罔有紀極 松木幾盡 又以眞木造船 每於搜討之時 白翎嶺民 恣意偷取 滿載以歸 松樹之稀少 已不可言 而至於眞木 亦將絕乏云(備邊司牒錄 45 肅宗 17年 辛未 閏 7月 9日)

이라 하여 大·小靑島의 松·眞木이 船人, 白翎島民의 偷斫에 의해 稀少해졌다는 것이다.

8) 斫伐·買入한 木材의 운반문제도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이다. 備邊司牒錄 50·肅宗 25年 己卯 9月 1日 기사에

嶺外松板下來時 路由於寧越·旌善之間明池川流來云(中略) 非但自水上流來 亦有嶺南馬運之路

라 있는 것을 보면 水運과 馬運의 방법으로 木材를 옮기고 있었다. 水運의 경우에는 뗏목을 이용하였다. (備邊司牒錄 37 肅宗 9年 癸亥 3月 16日 기사 참조) 沿海地나 海島의 松木을 伐採하였을 때에는 선박에 의한 운송이 행해졌을 것이다.

備邊司臚錄 99 英祖 12年 丙辰 6月 6日 기사에

(上略)京中喪行發引 一日不知其幾 而一行延燔 多者七八十柄 少者四五十柄 以此木商輩所散柱樑之材 皆歸於劈碎東炬 蓋買以家材則價廉 作炬則其利倍蓰故也 自今以後 凡係國家大事外 私用松炬 一切痛禁 現捉者 絕以重律 斷不饒貸 (中略)京中之私用松炬者 既無限節 如樓柱宮材及可用於板材之木 若斫而賣之 則輒受倍利 以此盜斫者滋多 而宮材反貴 松明徒嚴禁之請 誠爲知本之論分付漢城府 使之周察嚴禁 犯者則樣重究

라 하여 木商이 木材를 家材로서 팔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松炬로 만들어 팔았다고 있다. 또 家材로 파는 경우보다 이익이 다섯배나 되었다고 한다. 家材로 팔 경우와 松炬로 만들어 팔 경우의 가격이 정확히 밝혀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섯배 이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木商으로서는 松炬로 만들어 판매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매각한 松炬의 량이 얼마나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렵다. 다만 京中の 喪行 發引時에 延燔이 많으면 7~80柄, 적으면 4~50柄이었다 하니 이에 따르는 松炬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京中에서 松炬를 私用하는 것이 無限節인 형편이고, 또 松炬판매로 말미암아 宮材가 귀해질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을 보면 木商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松炬를 판매하고 있었는가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木商이 松炬 판매만을 통하여 모든 상행위를 영위하였다고 본다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느껴진다. 물론 위의 기록에는 松炬의 사용이 無限節이라 나와 있지만 앞서 보아온 것과 같은 多量의 목재를 모두 松炬 제작에 썼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備邊司臚錄 125 英祖 29年 癸酉 1月 25日 기사에,

司僕寺官員 以提調意達曰 內外寺各邊所用馬槽·馬板 每式年定式修改 而給價木商 買來於關東矣

라 있듯이 木商은 內外寺各邊에서 소용되는 馬槽·馬板의 改修에 필요한

목재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木商은 앞서의 儉斫을 일삼던 木商과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木商이라 하여 성격이 모두 동일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밖에도 木商은 黃腸木을 벌채하여 棺材로 매매한다든가,<sup>9)</sup> 혹은 營繕에 쓰이는 목재를 판매하기도 하였다.<sup>10)</sup>

그러나 木商의 활동에 있어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船材의 斫伐과 賣買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다. 肅宗 30年 6月 大司諫 李善茂의 啓를 보면,

近來船材所產處 濯濯至於蔚山 蓋緣儉斫無等 或以此販賣 或以此賣鹽 仍至於如此 極可慮也

라 하여 근래 船材의 產地가 濯濯해서 붉은 산이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이 儉斫에 있다는 것이다. 儉斫한 船材를 販賣한다거나 혹은 賣鹽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船材가 대량으로 儉斫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備邊司謄錄 181 正祖 17年 癸丑 5月 10日 기사에 보면

木商輩捨却風落 濫斫生松 斧斤日入 傳說狼藉 法網所在 萬萬寒心

이라 하여 木商이 風落木은 버리고 선박제조의 주재료였던 生松만을 濫斫하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다량의 船材가 木商에 의해 儉斫·濫斫되고 있었고 또 이것이 매매의 대상으로 되어있었다고 짐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木商이 伐採하여 賣却한 船材는 어디에 쓰여졌을까. 물론 선박의 建造에 사용되었겠지만, 어떠한 선박의 제조에 이용되었는가가 문제 될 것이다. 우선은 官船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잊혀두

9) 備邊司謄錄 50 肅宗 25年 己卯 9月 1日, 備邊司謄錄 103 英祖 14年 戊午 2月 13日 기사 참조.

10) 備邊司謄錄 47 肅宗 19年 癸酉 5月 19日, 備邊司謄錄 92 英祖 8年 壬子 10月 21日 기사 참조.

어도 무방할 듯 하다. 官船제조에의 경우 戰船·兵船·漕船 등의 建造는 주로 三南의 水營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船材 또한 나라에서 지정한 松田에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다.<sup>11)</sup> 따라서 官船의 건조에는 木商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일단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私船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기사에 주의하여 보자.

領議政鄭(太和)曰 我國安眠串·邊山·莞島之外 無船材可合之木 而近來私船太多 圖出松帖 私自斫伐者多 故船材之難 蓋由於此矣 自今以後 分付監司及水使處 痛加禁斷 勿令成給松帖 何如(下略)(備邊司謄錄 25 顯宗 6年 乙巳 2月 29日)

領議政 鄭太和의 上言으로서 安眠島를 비롯한 몇몇 지역만이 船材가 산출되는 곳인데 근래 私船이 너무 많아 松帖을 圖出하여 사사로이 斫伐하는 자가 많아 船材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備邊司謄錄 26 顯宗 8年 丁未 2月 14日 기사를 보면,

安眠島·邊山等處 船材絕乏 令道臣勿爲私給帖文 各別禁斷私斫之意

라 있다. 안면도·변산 등지의 船材가 부족하여 지니 帖文을 私給하여 船材를 사사로이 斫伐하는 것을 禁斷하라는 것이다. 松帖이나 帖文은 船材로 쓰이는 松木을 작별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생각된다. 私船의 船人들이 직접 松帖을 얻어 벌채하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는 木商이 伐採하여 私船제조업자에게 賣却하였던 것으로 보는 편이 보다 온당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다음의 기록에 유의하여 보자.

(上略)何云牟利 木商之輩 得一手本 得一關文 憑此下去 十株關文 至於百株 百株關文 至於千株 以無限之慾 取有限之木 此也(備邊司謄錄 153 英祖 45年 己丑 5月 9日)

11) 備邊司謄錄 31 肅宗 元年 乙卯 1月 15日, 備邊司謄錄 42 肅宗 14年 1月 25日 기사 참조. 한편 朝鮮 後期 官船의 제조에 대해서는 姜萬吉, 『李朝造船史』 『韓國文化史大系』 6 科學·技術史(下) 1968 pp. 885~893 참조.

木商이 작별허가증으로 보여지는 手本이나 關文을 얻어 허가량 이상으로 伐採하여 무한한 욕심을 有限한 木材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앞서의 기사에서 帖文을 가지고 私斫했던 사람들은 바로 木商이 아니었다 보여지며, 伐採한 목재를 私船제조업자에게 팔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木商이 斧斤을 동원하여 다량의 松木을 採伐하고 있던 사정이라든가 偷斫·濫斫한 船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 또 木商은 風害木은 버리고 生松만을 斫伐하였다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船材를 매매하고 있던 木商 자신이 선박을 建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 船材都賈를 겸하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sup>12)</sup> 그렇지만 모든 木商이 선박제조업자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앞에서 보아온 것 처럼 關東, 三南, 海西地方 등 전국의 船材產地에 木商의 발길이 닿고 있었던 것을 주위에 올려 본다면, 선박을 제조하면서 동시에 木商으로서 상행위에 종사할만한 여유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했으리라고도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木商과 선박제조업자 사이에는 별개의 流通過程이 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木商이 船材를 斫伐 혹은 購入하여 造船業者에게 賣却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木商이 多量의 松木을 採伐하고 있었고, 또한 斫伐한 船材를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木商은 木材의 斫伐과 賣賈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상업적 이윤을 얻을 수 있었을까. 가장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를 밝혀낼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만족할만한 해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山直과 결탁하여 松木 11,890 株를 斫

12) 이에 대해서는 姜萬吉, 「京江商人과 造船都賈」,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1973, pp.91~97 이 참조된다.

伐한 사람을 木商이라 한다면, 다소나마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즉 備邊司臚錄 36 肅宗 8年 壬戌 5月 17日 기사에

而近來備局 別分定造船之事 (中略) 而一船所用之材 多至三四百株

라 있는 바와 같이 1隻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木材는 많을 경우 3~400株였다. 이로 보면 11,890株라는 것은 약 30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량이 된다. 그런데 肅宗 32年 4月 永春縣監 鄭滄이 불법으로 선박을 건조하여 大船은 280兩, 小船은 60兩에 매각한적이 있었다.<sup>13)</sup> 위의 30척을 大船으로 계산한다면 가격의 변동은 있었겠지만 木商이 斫伐한 松木의 값어치는 일단 8,000兩 내외를 헤아리게 된다. 小船이라 하더라도 2,000兩 정도는 된다. 물론 이 금액의 전부가 木商의 소유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木商이 누리고 있던 상업적 이윤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木商은 그밖에도 많은 량의 木材를 斫伐·買入하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木商이 關文의 허가량 이상으로 伐採하여 有限한 木材로서 無限한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앞서의 기사도 납득할만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木商의 採伐과 賣買活動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이와 같은 木商의 伐採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야기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木商이 斫伐했던 木材, 특히 船材로 많이 쓰여졌던 松木의 경우 한번 베어내고 나면 단기간내에 자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船材로 쓰기 위해서는 1~200년이라는 장기간의 培養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松田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실체가 그러하였다. 아래의 기록들이 松田의 상태를 말하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① (韓城君李基夏)又所啓 臣於近年 得聞兩南松田 日就虛耗(備邊司臚錄 58 肅宗 33年 丁亥 6月 27日)

13) 承政院日記 429 肅宗 32年 丙戌 4月 10日.

② 各道松田 舉皆童濯 限滿之船 改築改造之材 尙患不給 政有難繼之慮(備邊司臚錄 163 正祖 5年 辛丑 11月 11日)

③ 近來百度之蹙廢 無非民國之深憂 而最所悶切者 即沿邑松政也(中略) 別級禁養 則不出數十年 將無造船之材矣(千一錄 甲子二月應旨疏 時弊十條 各道沿邑松田議)

兩南地方의 松田이 날로 피폐되어 간다는 지적이 있고(①), 各道의 松田이 대부분 童濯하여져 改築·改造에 필요한 船材가 부족하여 염려스럽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②). 또한 禹夏永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沿邑의 松政이라 하면서 얼마있지 않아 造船에 쓰일 목재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③).

松田이 피폐화됨에 따라 上記 ②·③에서도 나타났지만 船材, 특히 官船에 所用되는 船材의 경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① 刑曹判書李浣曰 近來沿邊船材垂乏 誠極可慮(備邊司臚錄 18 孝宗 7年 丙申 7月 23日)

② 而近來私船太多 圖出松帖 私自斫伐者多 故船材之難 盖由於此矣(備邊司臚錄 25 顯宗 6年 乙巳 2月 29日)

③ 即今非但陸地船材之難得 海島斫伐日增 而可合材木無多(備邊司臚錄 48 肅宗 20年 甲戌 9月 13日)

라 하여 沿邊의 船材가 부족하여져 몹시 염려스럽다는 것이라든가(①), 私船의 船材조달을 위하여 私私로이 松木을 斫伐하는 자가 많아 船材가 부족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②). 또한 陸地나 海島를 막론하고 船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린다(③).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木商의 偷斫·濫斫에 의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더우기 木商이 斫伐한 木材는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私船에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선재의 확보를 위하여 官船이 겪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생각된다. 물론 各道의 水營에서 관장하는 松田에서 伐木하여 官船의 改築·改造·新造 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本章의 앞부분에서 인용한 바 全羅左水營이 안고 있던 세가지 문제 가운데 松田이 童濯해지는 것이 첫째로 꼽히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木商의 濫伐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水營에서 관장하던 松田에까지 木商이 침투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官船材의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船材의 부족에 따라 船材價는 자연스럽게 등귀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備邊司謄錄 175 正祖 13年 己酉 8月 2日 기사에

故判書朴文秀 爲本道伯時 造置大船三十三隻 分授於南關名邑 名曰官船 每船各定船主 一人格軍十五名 而格軍 一名歲捧一兩錢 以爲改築新造之費 數十年來 木物價騰 元定之價 太半不足 (中略) 所謂官船 既無緊用

이라 있듯이 수십년 동안에 걸쳐 木價가 등귀하여 당초 정해놓은 가격으로서의 改築이나 新造의 비용에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官船은 이미 緊用하지 않다 하여 官船無用論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木商의 斫伐에 의하여 松田은 童漚하여졌고, 이는 또한 船材의 부족 특히 官船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자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木商의 斫伐과 賣買, 이에 따른 松田의 피폐화는 정부로서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松木의 培養이 短期的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戰兵船이나 漕船 등의 改築·改造·新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海防과 재정조달 문제에 있어서 우려할만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3. 松禁政策의 實施

木商의 濫斫·濫販과 이에 따른 松田의 피폐화가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前章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나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부가 떠나간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松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목

재가 儉斫되는 것을 막고 松木을 培養함으로써 松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원활한 선재의 조달과 이에 따른 戰兵船·漕船 등의 新·改造, 改築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松禁政策의 구체적 조치 가운데에는 肅宗 10年(甲子) 2월에 마련된 松禁事目<sup>14)</sup>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松禁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 실제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松禁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sup>15)</sup> 松禁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것이다.<sup>16)</sup> 그러나 보다 짜임새 있는 事目的 형태로 반포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甲子年松禁事目的 내용을 보면, 禁松都監官·面監官 등에 대한 임명규정, 山直의 의무와 임기, 陸地와 海島松田의 책임자에 대한 규정, 松田 책임자의 순시의무, 朝家の 松田廣占에 대한 면제폐단의 금지, 禁標內 入葬者와 冒耕者에 대한 처벌규정, 生松을 儉斫하는 자에 대한 처벌, 火田을 위한 放火금지, 禁標內的 中松 이상에 대한 상세한 株數기록, 奸民과 山直의 符同에 의한 농간의 폐단금지, 宜松山の 松木에 대한 帥臣의 私賣금지 등 모두 19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9개 조목을 내용상 분류하여 보면 松田을 관리하는 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10개 조목, 松田의 보호를 위한 儉斫·放火금지 등에 관련된 조치가 6개 조목, 기타 3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松田管理者의 의무와 儉斫禁止에 대한 규정이 집중적으로 공포되고 있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松田이 피폐해지는 근본 원인을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제거해 보려는 의도에서 반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備邊司謄錄 38 肅宗 10年 甲子 2月 30日.

15) 備邊司謄錄 7 仁祖 20年 壬午 1月 24日, 備邊司謄錄 14 孝宗 元年 2月 11日, 한편 松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조선왕조 초기부터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李崇寧, 「李朝松政考」,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20, 1981이 참고 된다.

16) 孝宗 7年 松木이 煮鹽에 쓰이고 있던 까닭에 船材를 보호, 長養키 위하여 戶曹 소속의 鹽盆 710坐를 모두 혁파하기도 하였다. 또한 公私各衙門의 沙鐵盆을 船材培養의 목적으로 撤罷하기도 하였다. (備邊司謄錄 18 孝宗 7年 丙申 1月 18日).

同年 11 月에는 黃海道沿海禁松事目<sup>17)</sup>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모두 13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의 대부분은 앞서의 松禁事目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1 조목에 斫木을 막기 위하여 煮鹽을 금단한다는 것이 특이하게 삽입되어 있다. 황해도 지방의 鹽盆이 어떠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然煮鹽 不過目前之事 松禁乃是久遠之計(備邊司謄錄 91 英祖 8 年 壬子 3 月 22 日)

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松木의 보호가 鹽에 우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8)</sup> 松木을 보호해 보려는 정부의 뜻이 강력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또한 肅宗 17 年 8 月에는 주요 松產地 중의 하나였던 邊山에 대한 禁松節目<sup>19)</sup>이 나오기도 하였다. 邊山禁松節目은 14 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내용은 甲子年松禁事目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英祖 7 年 8 月에는 8 개 조목으로 구성된 坡州禁山守護節目<sup>20)</sup>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한편 正祖 12 年에는 가장 많은 분량의 諸道松禁事目<sup>21)</sup>이 반포되었다. 모두 29 개 조목이다. 상세하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변화된 것은 그다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偷斫輩 대신 木商이라는 表現이 나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木商에 의한 피해를 이 당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松禁事目이나 節目만을 반포하여 松田을 보호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松木에 대한 偷·濫斫이 커다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 조치는 수시로 내려지고 있던 것이다. 예컨대 肅宗 43 年

17) 備邊司謄錄 38 肅宗 10 年 甲子 11 月 26 日.

18) 註 16) 참조.

19) 備邊司謄錄 45 肅宗 17 年 辛未 8 月 24 日.

20) 備邊司謄錄 90 英祖 7 年 辛亥 8 月 24 日.

21) 奎章閣圖書 957.

의 受敎 中에,

封山大松犯斫 若十株以上則梟示 十株以下減死定配(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 肅宗 43年)

라 하여 封山의 大松을 10株 이상 犯斫하는 자는 梟示하며, 10株 이하는 定配보낸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sup>22)</sup> 이에 앞서 肅宗 25년에는

生松斫伐人 勿爲定配近地(新補受敎輯錄 刑典 禁制 肅宗 25年)

라 하여 生松을 斫伐하는 자는 近地에는 定配보내지 말라는 조치가 나오기도 하였다. 續大典 5 刑典 禁制條를 보면,

空闕松木偷斫者 不限年邊遠定配

라 하여 松木을 偷斫하는 자는 무기한 變방에 定配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正祖 17년에는

有司堂上 尹行任所啓(中略) 所謂木商仍令該道一一查出 嚴刑定配(備邊司謄錄 181 正祖 17年 癸丑 5月 10日)

라 하여 木商을 일일히 조사 색출하여 定配 보내자는 건의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正祖 20年 3月에는

月前安東偷斫兩木商 雖已執捉邊配(下略)(備邊司謄錄 183 正祖 20年 丙辰 4月 11日)

라는 기사에서 보이듯이 安東에서 偷斫하던 木商이 체포되어 變방에 유배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松田의 보호를 위하여 몇차례에 걸친 松禁事目的 반포, 木商의 偷斫금지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함께 松木의 벌채를 금하는 封山·宜松山 등을 전국적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萬機要覽 財用篇 5 各道封山條

22) 실제로 英祖 即位年 統營吏 白楚圭가 船松 1,080餘株를 盜斫하였다가 梟示된 적이 있었다. (英祖實錄 1 英祖 即位年 甲辰 10月 辛未).

에 보면, 封山 282 個處 黃腸木封山 60 個處 松田 293 個處가 지정되어 있던 것이다.<sup>23)</sup>

이밖에도 備邊司謄錄 153 英祖 45 年 己丑 6 月 1 日 기사에

(領議政洪鳳漢) 又所啓 (中略) 曾聞中朝植松萬株者 輒加爵賞 此法誠矣 今若依此古事 勿論官長與平民 栽松萬樹 長過數尺者 枚報轉聞 施以加資之賞事 別爲之法(中略) 上曰 依爲之 申飭諸道 其令俾有實効

라 있듯이 萬株이상 栽松하는 자는 양반에서 平民에 이르기까지 포상한다는 방침이 나오기도 하였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松木을 培養하고 松田을 보호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萬株를 植松하는 일이 과연 용이하였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栽松을 잘 했다 하여 포상을 받은 기록은 별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와같은 정부의 松禁政策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肅宗 15 年 3 月 22 日 參贊官 李鳳徽의 啓에

禁標之嚴加定限 已多年所而所封之處 濯濯無一松 實可寒心(備邊司謄錄 43 肅宗 15 年 己巳 閏 3 月 22 日)

이라 있듯이 甲子年松禁事目이 반포된지 5 년이 지나지 않아 松禁의 성과

23) 참고삼아 각 지방별로 封山 일람표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封山 일람표

道名	封山	封山	黃腸木封山	松田	計
忠清道	73				73
全羅道	142	3			145
慶尙道	65	14	264		343
黃海道	2				2
江原道		43			43
咸鏡道				29	29
計	282	60	293		635

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肅宗 13年 8月 領議政 南九萬의 啓를 보면

且聞自甲子松禁事目頒布之後 松禁尤爲解弛云(備邊司謄錄 41 肅宗 13年 丁卯 8月 13日)

이라 하여 松禁事目 반포 이후에 松禁이 오히려 해이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松禁의 解弛는 다음 기록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① 近來國綱解弛 船材培養之山 舉皆濯濯 頃年自朝家別定宜松山抄封之後 松禁尤爲不嚴 誠可寒心(備邊司謄錄 48 肅宗 20年 甲戌 7月 15日)

② 即今三南船材長養之處 漸至濯濯 不過十年 將無造船之木 豈不大可寒心哉(同上 53 肅宗 29年 癸未 1月 21日)

③ 松田實爲國家所最重者 而願今法綱漸弛 奸偷日甚 各處松田 舉皆濯濯(中略) 松政之解弛 未有甚於近來 誠非細慮(同上 91 英祖 8年 壬子 3月 12日)

④ 目今諸道之弊 最可悶者 松政也(正祖實錄 11 正祖 5年 辛丑 4月 戊申)

⑤ 松政亦有國之大政 而近年以來 諸道封山到底童濯(中略) 此專由於紀綱解弛(弘齋全書 169 日得錄 政事 29)

船材를 培養하는 산이 대부분 濯濯해졌는데 宜松山을 지정한 후 松禁이 더욱 不嚴해 졌다는 것이다(①). ②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造船할만한 材木이 없어질 형편이라는 것이다. ③에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松田인데 法綱이 해이해져 偷斫이 날로 심해지고 따라서 松田이 모두 濯濯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各道의 폐단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松政이라는 말도 들린다(④). ⑤에서는 正祖 임금 자신이 松政의 해이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松禁政策이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긍정적인 결과는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래의 기록들이 우선 참고될 것이다.

① (領議政南九萬) 又所啓(中略) 又聞當初宜松山抄封時 士大夫有勢力者山所 則

拔去者 居多(備邊司臚錄 41 肅宗 13年 丁卯 8月 13日)

② 司啓辭 下三道沿海宜松山抄封時 多數落漏 旣封後 又多拔去云(同上 41 肅宗 13年 10月 18日)

③ 海邊三十里內禁松 乃是流來國法 頃年朝家 別有宜本封標之法 行之累年 多有弊端 當初宜松山所封處頗多 未久有形勢者山所及家近處 盡爲拔去(同上 60 肅宗 36年 庚寅 11月 13日 兩西兩湖巡撫使賚去應行節目)

宜松山을 지정할 당시 士大夫로서 세력있는 자들의 山所는 상당수 빠져 나갔으며(①), 下三道 沿海의 경우 宜松山으로 지정된 후에도 빠져나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②). ③에서도 처음에는 宜松山이 많이 있었으나 얼마있지 않아 勢力있는 자들의 山所와 집 근처는 모두 제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宜松山의 지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었겠는 지 의문이다.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松禁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守衛이나 山直들이 얼마만큼 충실히 禁松을 이행하였는가 라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① 近來松田養護之法 日漸解弛 一造戰船 憑幻百出 沿海諸山 舉皆童濯 此皆帥臣邊將 不能奉法之致(備邊司臚錄/148 英祖 41年 乙酉 10月 26日)

② 山直則私自契坊 與僉斫之輩 同心分利(備邊司臚錄 124 英祖 28年 壬申 8月 11日)

③ 軍門軍卒 藉勢偷斫 實爲癩弊(備邊司臚錄 127 英祖 30年 甲戌 10月 16日 四山松禁分屬軍門節目)

④ 淮陽府史任珣(中略)或以爲官家憑藉進上 多斫黃腸木作板(中略)黃腸偷斫事 捉人其時色吏尹東仁 及工庫奴次根等 詳問其委折是白乎 則尹東仁所告內 上年六月 年例進上黃腸板上制 別制各各一板封進時 稱以封餘是白遺 憑藉偷斫 好品板子二十四立 作板載來入於官庫是白如可 流伊載送於京中本宅的實是如是白遺(換凡翁漫錄<sup>24)</sup>)

24) 奎章閣圖書 15600 補訂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서울대 東亞文化研究所, 1980) 에는 著者와 年代가 未詳으로 되어 있다. 확실한 著作年代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정은 가능할 것 같다. 즉 瞻行御史書啓에 나오는 永平縣令 金煥이라는 人物은 1695年(肅宗 21)~1775年(英祖 51)까지 생존했던 사람이다. 또 本書 狀啓에 나오는 通川郡守 魚錫定은 1731年(英祖 7)~1793年(正祖 17)까지 살았던 人物이다. 따라서 두 人物의 存沒年代로 미루어 本書의 著作年代는

## 10 暗行御史書啓)

帥臣·邊將이 松禁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沿海諸山이 모두 童濯해졌다는 것이다(①). 또한 山直이 儉斫輩와 더불어 契坊을 조직하여 이익을 같이 하고 있던 모습도 보인다(②). ③에서는 軍門軍卒의 세력을 빙자한 儉斫이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松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三軍門의 軍卒에게 松牌를 주어 규찰토록 하기도 하였는데,<sup>25)</sup> 바로 그들이 儉斫을 일삼고 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淮陽府史 林珣같은 이는 進上을 빙자하여 黃腸木을 마구 斫伐한 다음 그 일부를 서울의 本家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松田의 保護와 감시의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宜松山 지정상의 문제라든가 松田管理者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지만, 船隻의 改造·改槳이라는 측면을 통하여 또 다른 이유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英祖 46年 2月 領議政 金致仁의 啓에

松政有國所重 非百餘年長養 無以成材 而各道舟艦之新造改槳 相續不已 以慶尙右道昨年所斫成冊見之 其數至於六千餘株之多 一處如此 諸道可知 以有限之松 資無己之用 是豈可繼之道乎(備邊司謄錄 154 英祖 46年 庚寅 2月 16日)

라 있다. 松木은 백여년 이상 되어야만 船材로 이용할 수 있는데 各道船隻의 新造와 改槳이 끊어지지 않아 慶尙右道의 경우 작년(정조 26년)에 斫伐한 松木이 6,000여주에 이르른다는 것이다. 또한 有限한 松木을 어찌 무한정 조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 正祖 2年 5月 全羅道左水使 李文德의 狀啓에도

일단 1731~1775년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魚錫定이 1761年 穆陵參奉이 되고 난 후 이어 通川郡守로 임명되고, 1767년에는 昌平郡守로 부임한 것을 보면(國朝榜目) 혹 1761~1767년 사이에 저작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적어도 그 당시의 사정을 기술해 놓은 것 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本書의 著者도 좀 더 考究하여 보면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5) 備邊司謄錄 124 英祖 28年 壬申 8月 11日.

26) 禹夏永같은 이는 「所謂水鎮邊將 俱是無識賤夫」(千一錄 甲子二月應旨疏 時弊十條 各道沿邑松田議)라고 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諸道封山童濯之患 專由於造船之無節(備邊司謄錄 159 正祖 2年 戊戌 5月 23日)

이라 하여 諸道の 封山이 童濯해지는 까닭이 때가 없이 造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같은 날 左議政 鄭存謙도

而近來帥臣 不有法典 初不親自看審 只憑該鎮之報 吏校之言 雖其完固 而不當改者 若其限滿 則不復區別 循例論報 船材之濫費 職由於此 極寒心(同上)

이라 하여 期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수할 필요가 없는 선박까지 改築하여 船材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의 기록들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과연 改築·新·改造를 그만큼 자주 시행하였는가 라는 것이다. 正祖 12年 1月 戶曹判書 徐有隣의 啓에

兩湖漕船十年新造 五年改築 自是法典所載 而近來船漢輩 奸僞百出 假稱致傷 限前請改之弊 種種有之 湖西事 尤極可駭(備邊司謄錄 172 正祖 12年 戊申 1月 13日)

라 있듯이, 船人들이 거짓으로 致傷했다고 보고하고 改築과 改造의 기한 전에 船材를 청하는 폐단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보수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改築의 이유를 들어 船材만 취하고 있던 것이다. 英祖 31年 1月 刑曹參判 李成中도

封山嚴防之意 大臣已陳達 而戰兵漕船修造時 亦多有憑藉濫斫 作板偷賣之弊 船材之漸盡 實由於此(備邊司謄錄 128 英祖 31年 乙亥 1月 22日)

라 하여 戰船·兵船·漕船의 修造時 마구 松木을 斫伐하여 偷賣하는 일이 많고, 바로 그 때문에 船材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의 거짓 보고에 의해 얻은 船材도 매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船材는 어디에 이용되었을까. 적어도 官船의 改造·改築에 쓰이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私船의 제조나 보수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실제로 허위보고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英祖 52年 忠淸道 水營에서 兵船·戰船 등을 改築하고

남은 船材 75 株를 京江人 馬希太·馬興石 등에게 發賣하였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sup>27)</sup> 이 사실로 미루어보면 허위 보고에 의해 折伐된 船材는 대부분 私船의 建造나 改造 등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sup>28)</sup>

그러나 이상의 이유나 사정만으로 松禁政策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까닭을 찾는다면 조급한 일이 아닐까 싶다. 宮家の 折受라는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肅宗 3年 8월 3일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에 吏曹判書 閔點이 말하기를

忠淸島安眠串 卽國家船材長養之處也 尺寸之地 亦不可許耕 (中略) 今者 內需以明安公主房百餘結折受事牒呈臣曹 此不可移戶曹 亦不可廢格不行 敢此仰達矣 此地設庄 國家三百年間所未有之事 何可到今設庄 致令船材終至濯濯乎(備邊司謄錄 33 肅宗 3年 丁巳 8月 3日)

라 하여 당시 최대의 産松地 중 하나였던 安眠島에 內需司가 明安公主房의 이름으로 100여결을 折受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左議政 權大運도

三百年船材長養之處 豈可使宮家設庄乎(同上)

라 하여 三百年 船材處에 대한 宮家の 設庄이 不可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船材가 생산되는 곳을 宮家에서 折受하고 있던 모습을 일단은 엿볼 수 있었으리라 믿는다. 肅宗 18年 2月 右議政 閔點의 啓에

光陽白雲山 眞松木長養之地 兩南水營及沿海各官各鎮戰兵船諸具所入 專靠於此 而自崇善君房折受打量 故本縣論報統營 因爲啓聞(備邊司謄錄 46 肅宗 18年 壬申 2

27) 備邊司謄錄 158 正祖 元年 丁酉 6月 1日.

28) 松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까닭으로는 이 밖에도 더 있을 것이다. 예컨대, 松田의 失火(備邊司謄錄 50 肅宗 25年 己卯 6月 20日, 備邊司謄錄 115 英祖 22年 丙寅 5月 15日)라든가 飢餓를 못 이긴 백성들의 松皮剝食(備邊司謄錄 91 英祖 8年 壬子 5月 26日, 備邊司謄錄 91 英祖 8年 壬子 5月 19日) 등이 그것이다. 또한 埋炭에 의한 蟲害(備邊司謄錄 36 肅宗 8年 壬戌 5月 16日), 松虫의 피해(與猶堂全書 第1集 第4卷 30a 蟲食松), 火田의 개간에 따른 松田의 피해(朝鮮 後期 火田에 대해서는 申虎澈, 朝鮮後期 火田의 擴大에 대하여, 歷史學報 91, 1981 참조) 등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원인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5月)

이라 있듯이 兩南水營과 各鎮의 戰兵船의 修補에 이용되던 光陽 白雲山 眞松木地를 崇善君房에서 折受하고 있었다.

또한 英祖 31年 5月 禮曹判書 李益炆의 啓에

懿昭墓位田 在於固城縣甘峙山下 元畚三百四十八結 而上年打量 則僅二百六結三 四年間如是減縮無他故也 甘峙山即統營松塲 松子飄落遍生 畚庫漸致陳廢 (中略) 本 縣所在明禮宮屯田 松弊如右(備邊司臚錄 128 英祖 31年 乙亥 5月 15日)

라 있듯이 明禮宮에서 固城縣 甘峙山 부근의 田結을 松田으로 삼아 소유 하고 있었다. 備邊司臚錄 94 英祖 9年 癸丑 7月 16日 기사를 보면,

江原道楊口縣天尾山黃腸封山處 (中略) 今者自新生翁主房折受 方有摘奸之命 此必 該宮任掌輩 欲爲伐木取利之計 非爲其火田也

라 하여 江原道 楊口縣 天尾山의 黃腸封山을 伐木, 取利의 목적으로 新生 翁主房에서 折受하고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 결국 나라에서 伐木을 금지 한 封山이라든가 官船의 보수에 쓰여지던 松田까지 官房에서 折受하고 있던 것이다.<sup>29)</sup>

이와 같은 宮家の 松田折受와 관련하여 宮家소속의 선박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肅宗 29年 1月 右議政 申琬의 啓에

內司船隻 從前勿禁 則今不可侵債 當以勿禁之意 行關分付 (中略) 即今三南船材長 養之處 漸至濯濯 不過十年 將無造船之木 豈不大可寒心哉 戰船及諸處待變船改造之 膳時尙慮難繼 內司及官家船隻 何可每每許斫乎 今後則一切防寒之意 敢此仰達(備邊 司臚錄 53 肅宗 29年 癸未 1月 22日)

이라 있다. 三南의 船材長養處가 濯濯해져서 戰船·待變船의 改造時에도 항상 船材가 부족한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內司· 宮家の 船隻의 斫伐을 금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속에서 어찌 매년 許

29) 官房의 松田折受는 鹽盆折受라는 측면과도 관련지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斫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보면 內司·宮家の 船舶에 소용되는 船材는 거의 대부분 斫伐이 허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官船의 선재가 부족해지는 형편 속에서도 內司·宮家の 船隻은 예외적인 경우에 놓여 있던 것이다. 宮房에서 封山·松田을 折受하고 있던 것과 짝을 이루고 있던 셈이다. 宮房에 대한 이와같은 특혜조치는 정부에서 펴고 있던 松禁政策과는 軌를 달리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內司 宮家の 선박이 어느 정도였는가 라는 점이다. 船隻의 數가 미미한 정도였다면, 그에 필요한 斫伐로서는 松田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肅宗 元年 8月 領議政 許積의 말에

關西大小船隻 皆屬於明禮宮(備邊司臚錄 31 肅宗 元年 乙卯 8月 30日)

이라 하여 關西地方의 大小船隻이 모두 明禮宮 소속이라 한 것이라든가, 肅宗 39年 7月 工曹의 啓에

曾在先朝 衙門·宮家所屬船四隻定數者(中略)雖以閒漫之司 而亦至七十餘隻(備邊司臚錄 66 肅宗 39年 癸巳 7月 18日)

이라 하여 衙門·宮家の 선박은 4척이 定數이지만 근래에는 비록 閒漫한 內司 宮家라 하더라도 70여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당시 內司 宮家에서 가지고 있던 선박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宮家·衙門의 과다한 선박 소유가 문제되어 肅宗 39年 8月 壽進宮·明禮宮·龍洞宮·貴人房·大君房 등 13개 宮房과 司僕寺·內需司·內侍府·讀書堂 등 19개 衙門의 선박의 수를 재조정 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정해진 宮房의 船隻을 보면 모두 합하여 100여척 정도에 불과하다.<sup>30)</sup> 內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가는 의문이다. 앞서 하나의 內司·宮房이 적어도 70

30) 備邊司臚錄 66 肅宗 39年 癸巳 8月 11日.

여척 이상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제한조치 이전의 宮房의 선박은 13개 중방으로 계산하여 거의 1,000여척 이상을 헤아리고 있던 것이다. 內司의 것까지 합하면 2,000여척 이상으로도 보인다. 더우기 당시 각 漕倉에 소속되어 있던 漕船은 모두 합하여 500척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sup>31)</sup> 各水營과 鎭에 배치되어 있던 戰船·兵船·防船·伺候船 등은 700척 내외였다.<sup>32)</sup> 漕船과 戰兵船 등을 더해 보아도 1,200척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국 宮家·內司 소속의 선박이 나라의 주요 官船의 數를 능가하는 정도를 헤아리고 있던 것이다. 宮房·衙門의 선박이 얼마만큼 많았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당량의 선박을 宮房이나 內司에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英祖 23年 12月 工曹의 啓에

近來各衙門諸宮家 皆置船隻 下輩寅緣作奸 冒錄紛紜者 船漢徒而濟其詐僞 圖得一張宮帖 輒庇八九私船 眞贗相混 稅捧漸縮(備邊司謄錄 118 英祖 23年 12月 20日)

이라 하여 各衙門·宮家에 船隻이 소속되어 宮帖을 지니고 있는데 10중 8~9가 私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수세액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구체적인 숫자는 밝혀볼 수 없으나 宮家·衙門 소속의 선박가운데 상당한 수가 私船이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肅宗 30年 3月 戶曹判書 金鎮龜의 啓에도

而近來漸不如前 有形勢衙門則船隻之數漸多 至於諸宮家遠代子孫 亦多有免稅私船者(備邊司謄錄 54 肅宗 30年 甲申 3月 27日)

라 하여 宮房에 免稅私船이 많다고 있다. 肅宗 34年 12月 工曹判書 閔鎮遠의 啓에도

31) 萬機要覽 財用篇 2 漕轉 한편 朝鮮 後期の 漕運制라든가 漕倉, 漕船 등에 대해서는 金玉根, 「朝鮮時代 漕運制 研究」, 『釜山産業大學論文集』 2, 1981 참고,  
32) 續大典 4 兵典 諸道兵船.

京江船隻 皆屬工曹 收捧船稅 各處津船 如有改造而初造之事 則以其所捧船稅措備物力者 本曹規例也 近來船隻 盡屬於諸上司·各軍門·諸宮家 各處所屬之船 則皆不得收稅(備邊司臚錄 59 肅宗 34年 戊子 12月 19日)

라 하여 京江의 船隻들이 모두 上司·宮家 등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工曹에서 收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처럼 많은 수의 私船이 宮家·衙門에 소속되게 되었을까. 肅宗 39年 7月 工曹의 啓를 보면

而近來因船隻之投屬衙門與宮家 收稅漸縮 船材則價本漸高 其勢爲可慮矣(備邊司臚錄 66 肅宗 39年 癸巳 7月 18日)

라 하여 船隻이 衙門·宮家에 投屬함에 따라 收稅額이 감축되고 船材價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다. 즉 投屬이라는 형태로 宮家·衙門에 소속되어 있던 것이다. 備邊司臚錄 37 肅宗 9年 癸亥 閏 6月 7日 기사에서도

今則所謂京江船 投屬諸上司各軍門者甚多

라 하여 상당수의 京江船이 上司나 軍門에 投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英祖 22年 閏 3月 工曹參判 沈聖希의 말도 참고가 될 것이다.

而明年限滿津船 多至十九隻云 其價必於春前出給 船材夏間買來 秋冬造成 明春分給各津 而十九隻之價 至於二千餘兩之多 一年船稅所收 則除厨院各軍門各宮房江華案付船隻 則私船一年收稅 多不過五六百兩(備邊司臚錄 115 英祖 22年 丙寅 閏 3月 15日)

津船 19隻의 建造費가 2,000여냥인데 반하여 收稅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司饗院·宮家·軍門·江華府 소속의 선박 등을 제외한 私船의 1年 수세액이 고작 5~600냥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선의 1年 수세액이 津船 19隻의 건조비의  $\frac{1}{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의 私船이 收稅를 피하여 宮房이나 衙門에 投屬하고 있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投屬한 私船과 宮家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 兩者가 서로 유리한 조건이 있었기에 그러했겠지만, 뚜렷한 기록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宮家の 경우 각지에 흩어져 있는 庄處, 漁場, 鹽盆 등지에서 수확되는 物貨들을 投屬한 私船을 통하여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私船의 경우에는 收稅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宮家 소속의 船隻이라는 것을 내세워 船材의 확보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宮家·內司의 物貨를 운송할 경우 稅穀의 운임보다 더 후한 船價가 보장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sup>33)</sup> 그러나 그 이상의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 별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松禁政策 속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甲子年松禁事目に「朝家爲除松田廣占之弊」라는 대목이 잠시 보이고 있을 뿐 이후에는 어떠한 松禁事目·節目에도 宮家와 私船에 대한 규제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松禁政策이 成果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르겠다.

33) 그러한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英祖 47年 6月 全羅道暗行御史 李養遂의 別單에 따르면,

順天稅穀萬餘石 每當裝載招致京船 而今年則京船無一下來(中略) 近來京江船之下往三南 比前大減 莫重稅穀之晚發濫載 誠由於此(備邊司謄錄 155 英祖 47年 辛卯 6月 15日).

이라 하여 順天稅穀 萬餘石을 매년 京船을 招致하여 운송하였는데 금년에는 1척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京江船이 三南地方에 내려오는 것이 전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英祖 末葉에 京江船이 三南의 稅穀운반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나라의 세곡 운송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는 나라에서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더욱이 官船의 사정이 점차 어려워져가는 형편이었을 진대는,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던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正祖 13年의 舟橋司 설치가 아닌가 한다. 임금 행행시 浮橋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여겨진다. 즉 京江私船을 흡수하여 세곡 운송을 원활하게 해 보려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稿를 달리하여 살펴보고 싶다.

한편 이러한 사정속에서 木商들은 보다 활발한 상업활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正祖 23年 12月 正言 沈晉永의 上疏를 빌어 備邊司에서 啓를 올린 것을 보면,

而近年以來 木商輩得上司關文 謂之以封山之外 而及其入山之際 加斫狼藉 安知不犯於封山之內(備邊司謄錄 189 正祖 23年 己未 12月 27日)

라 있듯이 木商이 上司의 關文을 얻어 封山의 內外를 가리지 않고 마구 斫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上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內司 혹은 宮房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앞서 살펴본 바 木材의 斫伐에 대한 宮家의 특혜를 상기해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또한

又聞臺臣言送本司者 則年前木商輩 持司饗院關文 下去江陵封山 恣意亂斫(同上)

이라는 것을 보면, 木商이 司饗院의 關文을 가지고 강릉의 封山에 들어가 멋대로 伐木하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사옹원은 御供에 관계되는 衙門이라 하여 肅宗 39年 8月 宮家·衙門의 船隻數를 再定할 때에도 제외된 적이 있었다 기왕의 규정대로 선박을(200隻)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다.<sup>34)</sup> 이러한 사옹원의 關文을 木商이 소유하고 木材를 마구 伐採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宮家·衙門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요컨대 木商은 宮家·衙門과 밀접히 관련되어 그들이 필요로 하던 木材를 조달하고 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가운데에는 막대한 量의 선박에 所用되는 船材도 공급되었을 것이다. 宮家·衙門 등에 投屬되어 있던 私船의 改造·改築, 혹은 新造에 따르는 船材가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기 해아릴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木商은 官船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지는 반면 私船의 活動이 차츰 활발하여지는 측면과 밀접히 연

34) 備邊司謄錄 66 肅宗 39年 癸巳 8月 11日.

결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松禁政策이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木商과 宮家·衙門, 그리고 私船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보다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4. 木材商人의 性格

지금까지 木商의 斫伐과 賣買活動, 이에 따른 松田의 피폐화와 船材의 부족 현상, 아울러 정부에서 실시한 松禁政策의 內容 및 그 成敗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木商이 宮家·私船과 연결되어 있던 모습도 밝혀 보았다. 그러나 木商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性格은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木商이 활동하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그들의 구체적인 면모라든가 성격의 파악에 대해서는 지나쳐 온 것이다. 사실 木商의 性格이나 實體를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손쉬운 작업이 아니다. 木材를 賣買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 史料에 모두가 木商으로 기술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同一한 성격의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身分이라든가 行爲의 性格에 따라 때로는 木商, 때로는 賈人, 때로는 私商이라는 여러 用語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로 나오는 상인들을 모두 들어 검토해 보아야 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木商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쳐 왔다. 이제 木商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접근해 보기 위하여 반드시 木商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木材를 취급 物種으로 삼고 있던 상인들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당시 商人들의 실체라든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상업구조 내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한다.

먼저 國用에 필요한 木材를 조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아 유지 하던 상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繕工監貢人이 우선 눈에 뜨인다. 肅宗 8年 10月 16日 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에 左參贊 呂聖齊가 올린 啓에 주목하여 보면,

臣待罪繕工監提調 貢物主人輩有弊端 故敢此仰達 本監貢案所付木物中 楸木十九條 楸木二十二條 大朴達三條 大半不足於一年國用(備邊司謄錄 36 肅宗 8年 壬戌 10月 18日)

이라 하여 繕工監 貢案에 올라 있는 木物 가운데 楸木 19條 楸木 22條 大朴達 3條로서는 1年分 國用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繕工監貢人은 이밖에 다른 종류의 木材도 조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정이 크게 달랐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肅宗 9年 3月 戶曹判書 尹堦의 啓에

繕工監貢案所付材木 元數不多 一年所捧 不足以支一年之用 故自前收稅於水上流 下材板 補用於各處營繕矣(備邊司謄錄 37 肅宗 9年 癸亥 3月 16日)

라 있다. 선공감 공안의 木材의 量이 원래 많지 않아서 1年 동안 조달받는 木材로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木材는 水上에 流下되는 木材로부터 收稅하여 각처의 營繕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繕工監貢人은 1年 國用에도 못미치는 木材만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던 셈이다. 더우기 英祖 25年 12月 戶曹判書 朴文秀가 國王에게 올린 말에

繕工外監 亦九營繕之一也 監役以士子新入生疎下輩 恣意弄奸 自上廟社殿宮 下至 學宮諸司 修改進排之際 貽弊貢人甚巨(英祖實錄 70 英祖 25年 己巳 12月 己卯)

라 있듯이 官吏들의 농간에 의하여 선공감 貢人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貢價를 후하게 지급받았다면 공급목재의 量이 적다거나 관리들의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貢人 신분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木材를 收稅을 통하여 채우려했던 정부가

貢價를 과연 후하게 지급하였을까는 의문이다. 貢人이 생겨나던 당시 時價의 10배에 가까운 貢價를 받기도 했던 상황과는<sup>35)</sup> 상당히 어긋나 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英祖 31年 8月 戶曹判書 李喆輔의 啓에

而大抵此(繕工外監)貢之自前不能保者 人不動幹 債如山積(備邊司謄錄 129 英祖 31年 乙亥 8月 8日)

이라 하였듯이 상당한 負債를 안고 있던 형편이었다. 결국 繕工監의 貢人들은 國用木材의 조달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英祖 27年 5月 戶曹判書 金尙星의 啓에

外監革罷之後 外都庫專當木物(備邊司謄錄 122 英祖 27年 辛未 5月 25日)

이라 있듯이 外都庫가 木材공급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外都庫 역시 貢人이었다. 더우기 外都庫의 설치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무리와 진통이 있었다. 즉 備邊司謄錄 129 英祖 31年 乙亥 8月 8日 기사에

外監貢物 一自革罷之後 國用木物 策應無人 故不得已姑爲募得江民六七人 名之以外都庫 大小木物 隋用隋賈

라 하여 外監貢物을 혁파한 뒤 國庫木物의 조달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江民 6~7人을 募得하여 外都庫라 하고 大小木物을 공급케 하였다는 것이다. 國用木材의 納品에 응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商人들에게 그만큼 커다란 매력을 주지 못하였던 셈이다. 國用物種의 납품을 하나의 特權으로 보는 인식은 점차 없어져가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外都庫 貢人들이 정부의 방침에 그대로 따랐는가는 의문이다. 英祖 51年 1月 戶曹判書 具允鉦의 啓를 보면

外都庫木物 每年自廟堂定數卜定於關東 流下時所經各邑不得收稅事 曾有定式 而近

35) 右議政宋(寅明)所啓 貢人言之 大同設立之初 爲念都民 以十倍之價磨鍊云云(備邊司謄錄 98 英祖 11年 乙卯 12月 12日).

來木商輩 不善舉行 定數之內 不無名色相混之弊 每致執頗 或至於屬公執留 故元數 太半減縮 需用每患苟簡(備邊司臚錄 157 英祖 51年 乙未 1月 6日)

이라 있다. 外都庫木物은 매년 비변사에서 關東에 卜定하여 流下時에는 各 邑에서 收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木商輩, 즉 外部庫貢人들이 제대로 이행치 않는다는 것이다. 國用 이외의 木材가 섞여져서 屬公, 執留되고 있 기 때문에 매년 需用이 염려스럽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司啓日(中略)而惟戶曹外部庫木物一千七百三十餘株 每年依定式許斫矣(中略)內 司執捉木物 即是外部庫貢人丁巳所斫者 而江陵五百七十七株內 一百二十五株 貢人輩 私自作板 七十五株斫斷留置於旌善地 而上項已作板者五百立 先爲流下於興原江 故 自本營已爲執捉 而犯科貢人等 今方嚴囚營獄(中略)至於作板流下 其犯禁牟利之跡 綻露無餘 貢人等雖自該道照律嚴勘(中略)自今以後 每當貢人下去時 自該曹預定期 限 督令流下 地方官亦以畢斫及始運形止 報于監營與該曹 以爲憑考檢飭之事 一體定 式分付何如 荅曰允(備邊司臚錄 189 正祖 23年 己未 12月 27日)

이라 있듯이 外都庫 貢人들은 매년 1,730餘株의 伐木만이 허락되어 있었 다. 2章에서 살펴본 바 偷斫輩가 山直과 결탁하여 벌채한 량이 11,890 株였다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극히 소량인 셈이다. 이에 貢人들은 私斫· 作板하여 留置시켜 두었다가 流下하기도 하였다. 私私로운 매매가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屬公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또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위의 기사에 보이듯 伐探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貢人이라 할지라도 斫伐과 운 송의 과정에서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허가량 이외의 斫伐은 금지 되어 있었고 私斫에 의한 이윤의 추구 또한 억제되어 있었다. 위반시 그 에 따르는 처벌이 내려졌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貢人들은

条里木廬市民 以爲都庫貢人逃走之後 大小木物 自戶曹取用於条里木廬(備邊司臚 錄 170 正祖 11年 丁未 1月 1日)

이라는 기사에 보이듯 貢人신분을 버리고 逃走하기까지 하였다.<sup>36)</sup>

결국 木商 가운데 國用木材를 조달하던 賈人들로서는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이윤의 추구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商人 본래의 욕망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불법적인 取利方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던 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더우기 이익의 획득을 위한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賈人이라는 신분이 장애가 될 때에는 신분 자체를 버리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賈人身分을 가진 木商으로서에는 이밖에 歸厚署 賈人이 있다. 이들 역시 사정은 繕工監이나 外都庫 賈人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英祖 15年 10月 歸厚署提調 朴弼成의 啓에

本署所管內用板賈價 當初磨鍊極其廉薄 蓋以其時板材之價賤故也 而數百年來無論 封山·私山皆爲童濯 則板材之稀貴十倍於前 而賈人之倒懸勢所固然 故二十年前(中略) 銀子一千兩限五年無邊貸下 戊戌年(中略) 請得賑廳錢文三千兩(中略) 而賑廳稱以匱乏 只許一千五百兩 故其時卽爲受來輸之都庫 以爲補欠之資矣 到今兩處銀錢已盡畢報 則更無着手之地 而板材之貴日以益甚 落本太多 無以支堪(中略) 則賈人等難保渙散 姑捨勿論 國用不繼 將至於生事之境(中略) 賑廳錢三千兩依前貸下 以前頭受價次次還報事 特爲許施焉 且伏聞公洪道安眠島風落松 多至八萬餘株 其中體大者優於作板云(中略) 劃給二三千株於至殘難支之本署 使將散之賈人 得以保存無弊應役何如(備邊司臚錄 105 英祖 15年 己未 10月 16日)

라 있다. 歸厚署의 內用板賈價가 원래 廉薄한데 그것은 板材價가 낮았을 당시에 책정된 때문이며, 板材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귀하게 된 요즈음에 와서는 賈人이 겪는 고통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銀子 1,000兩과 錢文 1,500兩을 貸下받아 도움이 되었으나 이제 그 銀錢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板材가 날로 귀해져서 落本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賈人이 이러한 처지를 감당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賈人은 해산할 것이며 國用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賑恤廳으로부터 3,000兩을 貸下받고 安眠島 風落松 8萬餘株 가운데 體大者 2~3,000株만 지급해주면 賈人이 保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리는 2,000兩을 貸下해 주는 것으로

36) 이러한 예는 蔘商의 경우에서도 찾아진다. 拙稿, 前揭論文 pp. 65~71 참조.

결정되었다. 風落松의 지급은 허락되지 않았다.<sup>37)</sup> 歸厚署貢人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았나 짐작케 한다. 좀 더 나아가면 板貢價에 의한 富의 축적 따위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歸厚署貢人이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英祖 14年 2月 右議政 宋寅明의 啓에

近來黃腸木之弊 誠如江原監司所達 而自監營若現發其潛商犯斫者 則必爲贖公 已斫者不可復贖 而贖公後商買 或納價買出 或又復犯斫者 比木商之所以蕩殘 而禁松之漸益耗失者也 此後則潛商犯斫之現發者 自監營復錄其株數 一一報于備局 犯斫者依律重懲 其所犯之木 則擇其合於壽哭者 送于歸厚署 以備國用 則似爲得宜矣(備邊司 贖錄 103 英祖 14年 戊午 2月 13日)

라 있듯이 潛商이 黃腸木을 犯斫하는 일이 많지만 贖公으로서 納價買出하거나 혹은 다시 犯斫하는 경우가 있어 木商이 蕩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발된 潛商은 중벌에 처하고 그들이 犯斫한 木材는 株數를 일일이 비변사에 보고한 다음 歸厚署에 보내어 國用에 쓰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때의 木商은 潛商과 대비되어 나오고 있고 감상이 작별한 黃腸木을 귀후서로 보내라는 것으로 보아 귀후서공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귀후서공인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潛商의 斫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木材를 정부에 공급하고 있던 貢人들의 형편을 검토하여 보았지만, 여기에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른 貢人들의 사정이다. 木材를 조달하던 貢人들의 어려운 처지가 일반적이었는가 특수한 것이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英祖 28年 7月 右議政 李天輔의 啓가 참고 된다.

京外民生之困瘁 莫有甚於近日 雖以京中貢人言之 近來物價騰踊 國役稠疊 戶曹亦不從貴上下 故貢人無以料生 昔之富饒者 今則殆不保存(備邊司 贖錄 124 英祖 28年 壬申 7月 7日)

物價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戶曹에서는 時價에 따라 貢價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貢人이 견디낼 수 없다는 것이다. 國役의 부담 또한 상당하였

37) 備邊司 贖錄 105 英祖 15年 己未 11月 6日.

기 때문에 예전에 부유하던 貢人이 거의 保存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124 英祖 28年 壬申 8月 2日 기사에

近來貢人輩責應 比前浩繁 無以支保 各司別人情之弊 月加歲增 而自內局 外至戶曹惠廳 諸各司捧上藥料 及各樣物種之時 原人情外 多般性索 如不滿意 則物種之雖可合者 累次點退 (中略) 貢人輩不能堪當 昔之富饒者 今者貧殘

이라 있는 것도 공인이 겪고 있던 고통과 어려운 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英祖 45年 3月 戶曹判書 趙雲達의 啓에

而即今貢人輩 俱足貧殘不來之類(備邊司謄錄 153 英祖 45年 己丑 4月 2日)

라 하여 貢人들이 모두 貧殘하다고 있는 것을 보아도 貢人들의 형편이 이전과는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木材를 조달하던 貢人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貢人身分을 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해 볼 것은 契人이다. 목재를 취급하던 契人으로는 繕工長木契人이 있다. 이들 역시 貢人과 동일한 성격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처해있던 사정도 貢人과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英祖 50年 4月 戶曹判書 具允鉉의 啓에

繕工長木契 乃各處假家與園排 所入眞雜長木及排設株木進排之貢物也 (中略) 而其外上司所屬之求索侵漁 各處婚喪時 分付借去 尤不勝支當 以貢人有限之財力 何能當無限之誅求乎 (中略) 定例所無之無價 第應亦無限節 (中略) 如是而貢人輩 安得不負債渙散乎(備邊司謄錄 156 英祖 50年 甲午 4月 30日)

라 하여各司의 誅求와 定例 이외의 無價進排가 많아 貢人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負債를 이겨내지 못하고 흩어질 형편이라는 것

38) 위와 같은 貢人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劉元東, 「19世紀 中葉의 經濟成長過程」, 『韓國近代經濟史研究』 1977, pp. 361~383; 鄭亨芝, 「李朝 後期 貢人權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pp. 62~100도 참조된다.

이다. 備邊司謄錄 156 英祖 50年 甲午 6月 15日 기사에

又況定例外 無價進排 亦甚夥然 若不一體嚴飭 則(長木竹契)貢人將不可支保

라 있는 것도 長木竹契貢人の 어려운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木材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던 상인으로는 이밖에 塵人이 있다. 備邊司謄錄 168 正祖 10年 丙午 1月 5日 기사에

內長木塵市民 以爲自上年以後 都庫進排之國用木物 使渠塵進排 浮費太多 而折價上下 落本夥然

이라 하여 都庫가 進排하던 國用木物의 조달을 內長木塵市民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浮費가 너무 많아 손해가 상당하다고 되어 있다. 國用木材의 공급을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윤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오히려 落本만 생겨나는 형편이었다. 앞서의 貢人과 다른 것은 처지였던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正祖 12年 1月 貢市堂上 徐有隣·李秉模의 啓에

此長木塵市民等所懷也 以爲都庫貢價 則椽每箇五錢五分 戶曹之取用於市民者 則每箇三錢五分 故猶爲稱寬矣 宮城木柵進排中椽 以一錢八分上下 落本過半 而所減削爲折半 用還又爲五分一 貧殘市民安能保存(備邊司謄錄 172 正祖 12年 戊申 1月 8日)

이라 있듯이 每椽當 都庫貢價는 5錢 5分인데 戶曹가 長木塵人으로부터 取用하는 가격은 3錢 5分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塵人이 每椽當 3錢 5分을 지급받고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貢價의 약  $\frac{2}{3}$ 에 지나지 않는 가격을 받고서도 收支가 맞았을까는 의문이다. 貢價를 지급받던 都庫貢人의 사정이 앞서 본 것과 같을 진대는, 塵人들 또한 이윤의 수취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의 기사에 宮城에 中椽木을 進排하고서 입게 되는 손해가 절반 이상이니 貧殘한 市民이 保存할 수 없다고 있는 것을 보면, 塵人들의 사정이 어떠한가는 쉽게 짐작될 것이다.

이와 같은 塵人의 사정은 비단 長木塵人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즉 英祖 10年 6月 戶曹判書 宋寅明의 啓에

都下塵人有難志之弊虞 敢此仰達矣 荐飢之餘 各塵市民舉皆蕩殘 近來諸上可各宮家私貿易 或以外上取用 或以半價勒買 下人輩又不無憑藉橫侵之弊 其勢無以支堪而拗於威令 不敢訴寃 (中略) 其弊日甚 市民終必渙散而後已矣 (備邊司謄錄 95 英祖 10年 甲寅 6月 6日)

라 하여 諸上司·各宮家の 外上取用과 半價勒買, 下人輩의 침탈로 말미암아 各塵市民이 대부분 蕩殘해졌고, 결국에는 渙散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備邊司謄錄 112 英祖 19年 癸亥 5月 25日 기사 또한

諸宮家各衙門 私貿易之弊 自先朝連有禁令 (中略) 而所謂私貿易 則或減價勒買使同白奪 或名爲外上 不即給價 民無告訴 勢難支堪

이라 하여 塵人들이 宮家·衙門으로부터 받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國用木材를 조달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던 상인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賈人·契人·塵人 등에 대하여 살펴 본 것이다. 官商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에게는 상행위에 있어서 특혜라든가 좋은 조건만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木材의 伐採라든가 운반, 斫伐한 木材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과 감시가 잇달았다. 또한 時價보다도 낮은 賈價의 지급, 宮家·衙門의 침탈로 말미암아 상당량의 부채까지 지녀야 했었다.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官商이라는 신분은 때에 따라 거주장소까지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다. 官商신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sup>39)</sup> 官商의 위치에서 자본을 축적한다든가 하는 따위의 일은 기대하기

39) 木商으로서 官商 신분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나갔을까는 분명치 않다. 혹 私商으로서 활동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 藝商의 例로 보아 그러하다. 拙稿, 前揭論文, pp. 61~71 참조.

이러웠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과는 다른 성격의 상인들, 즉 私商에 대하여 알아 볼 차례가 아닌가 싶다. 우선 英祖 12年 6月 江春監司 韓顯譽가 올린 狀啓를 보면

以爲本道封山 今皆濯濯 此由於木商輩 外結禁山之民 內挾京司之勢 圖出關文來付營門 私商之潛入犯斫 衆夜流下之類 又不可勝數(備邊司臚錄 99 英祖 12年 丙辰 6月 6日)

이라 하여 江原道 封山에 私商이 潛入하여 犯斫하고 밤을 타서 流下하는 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 私商의 행위가 潛入·犯斫으로 表現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私商의 경우 伐木은 물론 入山부터가 허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私商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는 松田의 보호를 위하여 偷斫행위를 엄금하고 있던 사정을 상기해볼 때 남득이 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私商이 流下한 木材는 위의 기사에 不可勝數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량에 이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나 느껴진다. 구체적인 숫자는 밝혀 있지 않으나 정부에서도 私商의 斫伐을 간과해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備邊司臚錄 117 英祖 23年 丁卯 5月 19日 기사에

禮曹參判金尙魯曰 即今關東四山 羈皆濯濯 封山之內 只有若干松木 故雖許標外 而斧斤輒亂入封山 (中略) 領議政金在魯曰 (中略) 年來軍門惠廳營造之役浩繁 此外繕工監·內需司·歸厚署內用板·氷庫梗材·太僕馬板等 諸司之報請備局者 相續許之大材木非一年可長 而一年內斫出之數如彼 實難繼之道也 (中略) 工曹判書金若魯曰 (中略) 而各處所請及私商 一切禁防

이라 하여 江原道 封山이 濯濯해져서 軍門, 惠廳의 營繕木, 繕工監·內需司·歸厚署의 內用板, 氷庫梗材, 太僕寺의 馬板에 쓸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러한 사정속에서 私商을 일체 禁防하라고 있는 것이다. 封山이 되폐해진 원인으로서 私商의 斫伐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 私商에 의해 伐採된 木材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章에서 살펴본 바 偷斫輩에 의한 斫伐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을 주의에 올려 본다면 허가되지 않는 伐木, 즉 私商에 의한 伐採가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松田의 피폐화를 초래하고 松禁政策을 실시하게 했던 木商은 바로 私商이 아니었을까 헤아려지는 것이다. 宮房·內司 그리고 私船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木商 역시 私商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官商이 처해있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嚴禁을 무릅쓰고 상당량의 木材를 伐採할 수 있었던 것이 반드시 私商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는가 라는 점이다. 일단은 產地 守衛이나 邊將, 山直輩, 혹은 兩班土豪, 때에 따라서는 京司官府와의 결탁에 의한 벌채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대체로 살펴본 바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宮房이나 內司를 통한 불법적인 關文의 取得과 그에 따른 伐木이다. 木商과 宮房·衙門, 私船이 연결되어 있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가능성만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分명한 자료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私商의 伐採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備邊司謄錄 正祖 15年 辛亥 2月 8日 기사를 통하여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所謂外都庫木物 自是貢人之受價進排者 (中略) 又況私商輩 符同貢人 稱以外都庫木物者 首尾相接 畢竟公家所納之數甚少 中間私商所販之物甚多

라 하여 外都庫木物은 貢인이 受價進排하는 것인데, 私商이 外都庫의 貢인과 符同하여 外都庫木物이라 칭하는 것이 首尾가 相接한 형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따라 公家に 납부하는 量보다 중간에서 私商이 판매하는 양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私商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주목할만한 것은 私商이 外都庫貢인과 符同하것다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私商과 官商이 상호 對立되어 있

다기 보다는 오히려 兩者가 깊이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商權을 다루는 입장이 아니라 동일한 이해 관계에 놓여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私商과 官商이 결탁하고 있던 모습으로도 비춰진다.

英祖 23年 5月 禮曹參判 金尙魯의 말에

而大抵京司 如得標外許斫之令 則下送木商 使之取來 而木商鞏縮結本道木賊 憑藉公文 恣犯黃腸 偷斫之患殆無已時 幾何而黃腸 無一株松乎 是誠寒心矣(備邊司謄錄 117 英祖 23年 丁卯 5月 19日)

라 하여 京司에서 木商으로 하여금 木材를 取來케 하면 그들이 木賊과 締結하여 公文을 빙자, 偷斫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木賊은 私商의인 性格을 띤 사람으로 보아 별 무리는 없을 듯 하다. 그렇다면 京司의 公文을 소지하고 木賊과 결탁한 木商은 賈人이나 契人과 같은 官商이었을 것이다. 양자가 締結하였다는 사실은 결국 官·私商의 결탁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고 해야겠다.

서로 다른 처지와 입장에서 상행위에 종사하던 양자가 대립이 아닌 결탁의 양상으로 나아간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그렇지만 官商의 사정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상기한다면, 官商이 私商과 결탁했다는 사실이 전연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官商의 경우 정부로부터 商人身分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고 있지 못하였다. 特權商人이라 부르기에 이미 名實이 상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歸厚署賈人 같은 경우 潛商의 활동에 의해 상당한 피해도 입고 있었다. 官商은 새로운 保存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신분은 官商이면서도 상행위의 성격은 私商的인 것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官商 신분을 포기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朝鮮 後期 木商의 活動은 私商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나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官商조차도 私商的인 성격의 상행위를 통하여 자신

들을 보존,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 5. 結 語

지금까지 朝鮮 後期の 木商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木商의 활동이라든가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 아울러 木商의 性格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 온 것이다. 이제 그 결과의 대강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코자 한다.

木商은 우선 상당량의 木材를 伐採하고 있었다. 斧斤을 동원한다든가 山直, 兩班과 결합된 契房의 조직을 통하여 斫伐하고 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守습이라든가 地方各營, 一般民으로부터도 木材를 매입하고 있었다. 木商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목재를 松炬로 만들어 판다든가 棺材, 家材 등으로 팔고 있었다. 그러나 木商이 주로 벌채하여 매각하였던 것은 선박의 건조, 개삭 등에 쓰이는 船材였다. 船材는 대부분 私船제조업자에게 賣却되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적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木商의 斫伐과 賣買活動에 따라 나라의 松田은 점차 피폐되어 갔다. 戰兵船과 漕船의 改造·改築·新造가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더구나 船材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培養이 필요하였다. 木商의 활동에 따른 松田의 童濯化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松禁事目과 節目을 반포하여 이러한 현상을 극복해보려 하였다. 儉斫者에 대한 禁畵과 처벌조치도 수시로 내리고 있었다. 封山을 지정하여 斫伐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松田책임자의 부정이라든가 감시소홀, 改造·改築의 허위보고에 의한 船材의 儉斫과 賣買 등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까닭으로서는 宮房의 折受라는 측면이 있었다. 宮房에서는 封山까지도 折受하고 있었다.

宮家·內司에서 필요한 木材 또한 斫伐이 허가되고 있었다. 더구나 松禁事目·節目에는 宮家·衙門에 대한 금지조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상당수의 私船이 宮家·內司에 投屬하고 있었다. 宮房船隻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였다. 木商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宮房·內司 그리고 私船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필요로 하던 木材를 조달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들의 결속을 제어하지 못하는 한 松禁政策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편 木商 가운데 官商이라 할 수 있는 繕工監·外都庫·歸厚署賈人, 繕工長木契人, 長木塵人 등의 경제적 사정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허가된 伐採量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時價에 따라 賈價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판리들의 침탈 또한 적지 않았다. 이윤의 수취는 커녕 부채만 늘어나는 형편이었다. 官商신분을 내버리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私商의 경우 斫伐은 물론 入山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官商보다 더 심한 제약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斫伐한 목재는 상당량에 이르고 있었다. 僞斫·濫斫에 의한 것이었다. 產地 守衛이나 山直, 京司와의 결탁이 이를 가능케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宮房·內司와도 연결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그런데 私商의 伐採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은 官商과의 결탁에 의한 것이다. 賈人과 私商이 매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해 관계 위에서 상행위를 벌이고 있던 것이다. 官商의 처지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官商으로서의 권리조차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私商과의 결탁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결국 신분은 官商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벌이고 있던 상행위의 성격은 私商의인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던 것이다. 당시 상업계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목할만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다만 物種에 따라서는 官商이 여전히 特權을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을 附言해 두고자 한다.

## 〈英文 要約〉

A Study of the Timber Merchants in the  
Late Yi Dynasty

Oh, Söng

This treatise aims at researching the nature and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timber merchants in the late Yi Dynasty and the government's policy for them.

The timber merchants were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timbering and dealing on a considerable scale. Timber for ship-building was chiefly dealt in. That is, they felled and sold a great deal of pine wood to be used for building and repairing ships. And it was mainly to the private ship builders that they sold timbers, including those which were to be used for official ships and which is guessed to have given them not a little profit. Thus national pine woods went waste and the shortage of the timbers for official ships became serious. The timber merchants' felling and selling of timbers had become a social problem.

In their effort to meet the problem, the governments occasionally proclaimed *Song-geum-sa-mog* (松禁事目) and made provisions against illegal felling. Those official policies, however, did not work, owing to wood-keepers' negligence of their duties and the illegal timbering and selling of the timbers for official ships with the help of the sailors' false reports.

But the most remarkable thing was the arbitrary, illegal ownership by *Goong-bang* (宮房) and *Nae-sa* (內司). The *Goong-bang* and *Naesa* not only arbitrarily owned pine forests but possessed a lot of vessels, which surpassed the number of the official ships of the government. The *Goong-bang* vessels included a considerable number of private

ones. The timber merchant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them. As far as the connections among them were not broken, the policy of forbidding the pine-timbering was not to obtain the expected result.

There were some timber merchants—the official merchants—who were paid for their providing such timbers as were need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were permitted to fell extremely small amount of wood and were often disseized of a great deal by officials. In addition, they were not paid in current prices. They were, in fact, liable for increasing debts. Such a predicament forced some of them to give up the positions of official merchant and run away.

Private merchants, who were subject to stricter control than official merchants, were not permitted even to enter woods, let alone felling. Nevertheless, they felled and dealt in a great deal of wood, partially supported by their collusion with forest rangers and magistrates. It is likely, though uncertain from records, that they acted in collusion with *Goong-bang* and *Nae-sa*.

Here, what must be remarked is such timbering as was aided by their collusion with the official merchant. The private merchants and the official merchants shared the same interests. This is a very remarkable fact in the commercial field in the late Yi Dynasty. But, considering the above mentioned needs predicament of the official merchant, it does not admit of no understanding. They had become a type of private merchant by the nature of their commercial activities, though official merchants by status.

In short, the initiative in the timber merchant's activities in the late Yi Dynasty was taken by private merchants in that even official merchants changed themselves into private merchants in the nature of their activities.